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議案 番號	204
----------	-----

提出年月日: 1993. 11.
提 案 者: 崔圭洛議員外6人

1. 主 文

'94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 '92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審査하기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11人으로 構成함.

2.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第118條 및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永登浦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94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 '92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50條 및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委員會條例 第8條 第2項에 의거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함.

3. 參考事項

- 가. 關聯法規
 -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125條
 -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委員會條例 第8條 第2項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심의 번호	205
----------	-----

발의년월일: 1993. 11.
발 의 자: 조연제의원의외6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함.

2. 주요골자

- 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대상
 - (1) 구청장
 - (2) 부구청장
 - (3) 총무국장
 - (4) 재무국장
 - (5) 시민국장
 - (6) 도시정비국장
 - (7) 건설국장
 - (8) 보건소장
- 나. 출석일자: 1993. 12. 2(목)~4(토) (3일간)
14:00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